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5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김소희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권영진 · 신동욱 · 김대식

이헌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 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및 제47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에따른"으로, "요건과 그 밖에"를 "요건, 승진 가산점 기준 등에"로 한다.

②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이하 "다자녀 양육 교육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 나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
별 승진) ① (생 략)	별 승진)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
	는 교육공무원(이하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
	산점을 부여하거나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
	진임용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u> 특별 승진의 <u>요건</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과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	<u>요건, 승진 가산점 기</u>
통령령으로 정한다.	<u>준 등에</u>
제47조(정년) ① (생 략)	제47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자
	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
	<u>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u>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